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65
----------	-------

발의연월일 : 2023. 1. 9.

발의자 : 최인호 · 김민기 · 맹성규  
민홍철 · 박상혁 · 박재호  
신정훈 · 이학영 · 장철민  
전재수 · 한준호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간선급행버스체계 면허는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정해진 노선과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와 유사하며, 이들 운송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와 법 체계의 효율성을 위하여 법 제31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노선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의무에 한정하여 준용하고 있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에 대한 관리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준용 범위를 확대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수 종사자의 사고기록을 관리하게 하는 등 간선급행버스체계 면허 관리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등).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21조제2항 · 제6항 · 제7항,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제27조의3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요건”을 “요건 및 준수사항”으로, “제3항까지”를 “제3항까지,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수종사자”를 “여객”으로,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을 “제27조의2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사고기록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①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p> <p>②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u>요건</u>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부터 <u>제3항까지</u>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운수종사자”로 본다.</p> <p>③ <u>운수종사자의</u> 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및 <u>제3항</u>을 준용한다.</p> <p><u>&lt;신 설&gt;</u></p>	<p>제3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①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21조제2항 · 제6항 · 제7항,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제27조의3의 규정----</p> <p>② ----- ----- ----- <u>요건 및 준수사항</u>----- -----<u>제3항</u>,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u>제3항</u>-----.</p> <p>③ <u>여객</u>----- ----- ----- <u>제27조의2의 규정</u>-----.</p> <p>④ 사고기록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를 준용한다.</p>